

제목 :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적용

■ 시행 예정일 : 2021.08.16

■ 개정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p>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u>(이하 "본인" 또는 "협력기업"이라 합니다)은</u> <u>(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u> <u>따라</u> (이하 "구매기업"이라 합니다)의 발주서를 <u>근거로 하는 은행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을 위한</u> 20__년 __월__일자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원 약정서"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하며, 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p> <p>제1조 <생략> 제2조(입금계좌의 지정) <u>본인은 은행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개별대출금의 입금</u> <u>또는 발주서상의 대금지급일 도래시의 결제대금 입금을 위한</u> <u>입금계좌를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의</u> <u>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u></p> <table border="1" data-bbox="206 1257 1043 1337"> <thead> <tr> <th>예금주</th> <th>예금주사업자번호</th> <th>계좌번호</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예금주	예금주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비고					<p>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u>본인은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을 위한</u> 20__년 __월__일자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원 약정서"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하며, 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p> <p>제1조 <좌동> 제2조(입금계좌의 지정) <u>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개별대출금의 입금 또는</u> <u>발주서상의 대금지급일 도래시의 결제대금 입금을 위한 입금계좌는</u> <u>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CMS 계좌 제외)중</u> <u>다음의 계좌로 합니다.</u></p> <table border="1" data-bbox="1070 1257 1908 1337"> <thead> <tr> <th>예금주</th> <th>예금주사업자번호</th> <th>계좌번호</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예금주	예금주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비고					<p>일부 문구 삭제 및 변경</p> <p>문단전체변경</p>
예금주	예금주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비고															
예금주	예금주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비고															

			법인의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법인의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내용 삭제 내용 삭제 면책조항명 변경 문단 변경
<p>제3조 ~ 제4조 <생략></p> <p>제5조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p> <p>①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또는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정을 할 경우, 은행은 본인과 별도 약정한 확정채권 여신약정(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u>상생 e-안심팩토링대출</u>, 상생일반구매론 등)에 따른 대출이나 선입금(이하 "확정채권대출"이라 합니다)을 <u>자동으로</u> 실행하여 개별대출금 만기일에 불구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합니다.</p> <p>② ~ ⑥ <생략></p> <p>제6조 <생략></p> <p>제7조 (면책)</p> <p>① 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 또는 전산조작오류 등 과실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은행에 전송한 경우, 은행이 이를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이상, 은행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단,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 합니다.</p> <p>② <u>은행은 본인으로부터 접수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가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본인에</u></p>			<p>제3조 ~ 제4조 <좌동></p> <p>제5조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p> <p>①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또는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정을 할 경우, 은행은 본인과 별도 약정한 확정채권 여신약정(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u><삭제></u> 상생일반구매론 등)에 따른 대출이나 선입금(이하 "확정채권대출"이라 합니다)을 <u><삭제></u> 실행하여 개별대출금 만기일에 불구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합니다.</p> <p>② ~ ⑥ <좌동></p> <p>제6조 <좌동></p> <p>제7조 (손실부담 및 면책)</p> <p>① 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 또는 전산조작오류 등 과실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은행에 전송한 경우, 은행이 이를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이상, 은행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단,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 합니다.</p> <p>② <u>이 약정 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u></p>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 <생략>

제9조 (추가약정의 효력)

① ~ ② <생략>

③ 원 약정서에서 정한 여신기간 만료일 전까지 은행 또는 본인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 약정서의 여신기한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은행이 정한 최장기간(30년)내에서 구매기업과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의 연장 기간에 따라 자동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연장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 2. <생략>

④ <생략>

제8조 <좌동>

제9조 <좌동>

① ~ ② <좌동>

③ 원 약정서에서 정한 여신기간 만료일 전까지 은행 또는 본인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 약정서의 여신기한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삭제> 구매기업과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의 연장 기간에 따라 자동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연장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 2. <좌동>

④ <좌동>

내용 삭제